대법원 2024도1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은행 직원인 피고인 1과 그 동생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은행 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 기소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참가인 1~10이 참가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들 및 참가인 1~7,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 징역형 및 추징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참가인 1~7, 9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피고인 1, 2 : 일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면소, 나머지 모두 유죄, ② 피고인 3 : 유죄, ③ 참가인 1~7, 9 추징, ④ 참가인 8, 10 추징 제외)하였음(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1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사건의 개관

- 피고인 1의 지위 및 피고인 1, 2의 공모
 - 피고인 1이 피해 은행의 기업개선부에서 기업경영개선 업무 중 하나인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생인 피고인 2와 함께 하던 사업 부진, 투자 손실 등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 1, 2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매각관련 자금을 문서 위조·허위보고를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 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 (1) 2022고합369
- 피고인 1,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 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 2012. 10. 12. 자 횡령
 - 피고인 1이 액면금 17,333,25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한 뒤, 2015. 9.경까지 채무변제금, 해외투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2015. 9. 25. 자 횡령
 - 피고인 1이 액면금 14,807,932,082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한 뒤, 2018. 6.경까지 투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2018. 6. 11. 자 횡령
 - 피고인 1이 계좌해지한 잔액 29,310,963,899원을 피고인들이 미리 설립해 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투자금 명목 등으로임의 소비하여 횡령
- 피고인 1, 2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 피고인 1, 2가 위 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에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금원을 물품 또는 용역거래대금으로 가장하여 2013. 1. 24. ~ 2014. 11. 24. 총 10회에 걸쳐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로 5,618,963.2NZD(5,045,433,174원) 송금하여 대한민국의 재산 국외도 피

■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 피고인 1이 위 2015. 9. 25. 자 횡령과 2018. 6. 11. 자 횡령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 피고인 1의 공문서위조 및 행사

● 피고인 1이 2017. 7. 24.경 자신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위 횡령이 발 각될 것을 우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위조 및 행사

■ 피고인 3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의 전업투자자인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범죄수익등인 정황을 알면서 2012. 10. 19. ~ 2022. 4. 20. 총 287회에 걸쳐 1,655,482,000원을 받음

(2) 2023고합291

- 피고인 1, 2의 2012. 3. 12. 자 「특정경제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원심 면소
 - 피고인 1이 액면금 1,150,088,430원 권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뒤, 피고인 1,2 및 가족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피고인 1, 2의 2012. 6. 4.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원심 면소
 - 피고인 1이 다른 회사 주식(시가 2,254,554,750원 상당)의 출고신청 절차를 완료한 뒤, 그 주식을 실물증권으로 출고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건네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2 등의 계좌에 분할 입고한 다음, 이를 피고인 1,2 및 가족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피고인 1, 2의 2014. 8. 9.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 피고인 1이 액면금 56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하여 피고인 2에 게 전달한 뒤,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피고인 1, 2의 2017, 1, 15, 자 업무상횡령

• 피고인들이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및 이자 75,411,390원을 이체받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피고인 1, 2의 2017. 11. 3. 자 업무상횡령

● 피고인들이 채권자 정산 후 잔금 156,779,647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 로 이체받고, 투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피고인 1, 2의 2020. 6. 30. 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종합부동산세 91,306,560원의 환급금을 이체받은 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2. 소송경과

		공소사실	제1심	원심
2022고함369	피고인 1, 2	2012. 10. 12. 자 횡령	유죄	유죄
		2015. 9. 25. 자 횡령	유죄	유죄
		2018. 6. 11. 자 횡령	유죄	유죄
		재산국외도피	유죄	유죄
	피고인 1	사문서위조	유죄	유죄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유죄
		공문서위조	유죄	유죄
		위조공문서행사	유죄	유죄
	피고인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죄	유죄
			이유무죄	유죄
2023고합291	피고인 1, 2	2012. 3. 12. 자 횡령	면소	면소

		2012. 6. 4. 자 횡령	면소	면소
		2014. 8. 9. 자 횡령	유죄	유죄
		2017. 1. 5. 자 횡령	유죄	유죄
		2017. 11. 3. 자 횡령	유죄	유죄
		2020. 6. 30. 자 횡령	유죄	유죄

■ 제1-1심(2022고합369)

피고인 1 : 징역 13년, 32,376,557,553원 추징

● 피고인 2 : 징역 10년, 32,376,557,553원 추징

● 피고인 3 : 징역 1년, 1,037,282,000원 추징 (일부 이유무죄)

● 참가인 1 : 646,733,518원 추징, 참가인 2 : 60,448,530원 추징

● 위조 부분 폐기

■ 제1-2심(2023고합291)

피고인 1 : 징역 6년, 2,961,748,798원 추징

피고인 2 · 징역 5년, 2.961.748.798원 추징

● 2012. 3. 12. 자 횡령 및 2012. 6. 4. 자 횡령은 **면소**

■ 원심

● 검사의 제1-2심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

● 피고인 1 : 파기, **면소 제외 모두 유죄**, 징역 15년, 33,207,558,858원 추징(그중 5.045.433.174원 피고인 2와 공동하여)

● 피고인 2 : 파기, **면소 제외 모두 유죄**, 징역 12년, 33,207,558,858원 추징(그중 5,045,433,174원 피고인 1과 공동하여)

• 피고인 3 : 파기, 유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395,782,000원 추 징

• 참가인 1 : 620,038,668원, 참가인 2 : 838,305,127원, 참가인 3 : 5,500,000원, 참가인 4 : 9,350,000원, 참가인 5 : 249,506,435원, 참가

인 6 : 1,765,902,805원, 참가인 7 : 838,600,000원, 참가인 9 : 282,974,000원 각 추징

- 위조 부분 폐기
- 원심의 면소 판단 이유
 - 각 횡령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2012. 3. 12. 자 및 2012. 6. 4. 자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되었음 (2023. 4. 12. 공소제기)
- 원심의 추징 선고·미선고 이유
 - 피고인 1, 2 및 제3자에 대한 추징 가능 이유
 - ① 피해 은행은 최초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자료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②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거나 주변인에게 지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등으로 은닉되어 있어 피해 은행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은행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몰수보전을 요청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부패재산의 몰수 및회복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 참가인 1, 2에 대한 추징 선고
 - 제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었고, 원심에서 추징액수를 달리함
 - 참가인 3~7, 9에 대한 추징 선고
 - 제1-1심의 참가허가 결정 이후 14일 경과하였으므로, 원심이 추징선 고 가능
 - 나머지 참가고지대상자들에 대한 추징 미선고
 - 고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9. 30. 제1원심재판

- 이 종결되었으므로, 몰수재판 할 수 없음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면소판단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며,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검사 및 참가인 1 내지 7.9가 상고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 1, 2의 각 범행의 죄수관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서 참가절차의 성격
- 피고인들 및 참가인들에 대한 원심의 추징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와 피고인들 및 참가인 1~7, 9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면소·추징판단 부분)
 - 피고인 1, 2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고, 검사 주장의 추징 대상자들 중 피고인들 및 참 가인 1~7, 9에 대하여만 위 면소 판단 부분 등을 반영하여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형사재판에서 심급의 이익,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추징판단 부분)
 -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

- 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 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5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음
- 피고인 3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
- 참가인 1~7, 9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추징 판단 부분)
 - 참가인 1 내지 7,9에 대하여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